2. FSB,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에 대한 보충지침 공개 협의안 발표

□ 금융안정위원회(Financial Stability Board, 이하 FSB)는 건전한 보상체계의 원칙 및 이행기준(Principles and Standard on Sound Compensation Practices)에 대한 보충지침 발표에 앞서 보충지침에 대한 공개 협의안(Consultative Document)[26]을 발표함

○ 건전한 보상체계의 원칙은 2008년 G20 정상회담의 금융시장 개혁요구에 대한 결과물로서, 1) 성과보상체계의 지배구조, 2) 리스크와 보상의 연계, 3) 감독강화 및 이해관계자의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FSB 회원국 중심으로 동 원칙을 수용하고 있음

- 우리나라 역시 2010년 1월 감독당국 및 업계가 공동으로 작성한 업권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통해 FSB의 보상체계 원칙을 수용하였음
- 2009년 보상체계의 원칙 및 이행기준 제정 이후, FSB는 정기적으로 각 국의 이행성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이행성과 보고서는 2017.7.4.에 발간됨[27]

○ 보충지침 공개 협의안은 2015년 5월에 발족된 FSB의 Misconduct Workplan의 일환임

-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부정행위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Misconduct Workplan은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개선이 부정행위를 줄이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, 외환 및 상품시장에서의 글로벌 행위규준 개선, 주요 벤치마크 대상의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고 있음
- 보충지침 공개 협의안에 대한 의견개진은 2017년 8월말까지 가능하며, 보충지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2018년 3월에 게시될 예정임

□ 보충지침이 확정될 경우 건전한 보상체계의 원칙 및 이행기준의 구체성 및 실효성이 보강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금융기관 임원 보상체계 및 보상과 리스크 연계에 있어 ESG 요소가 직접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임

○ 공개 협의안은 크게 6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 중에는 정량적이고 비재무적인 요소가 보상체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협의가 포함되어 있어, 향후 ESG 요소가 금융기관 임원 보상체계에 고려될 것으로 예상됨

○ 공개 협의안에는 건전한 보상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기준의 필요성 여부, 기준의 구체성 확정 등 건전한 보상체계의 원칙 및 이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음

- 변동보상 축소 또는 환수규정, 연간 변동보상 조정이 건전한 보상체계 확보를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인지 여부, 보상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최소 요건 제공, 보상과 리스크를 연계함에 있어 요구되는 변동보상의 비중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

26) See FSB Press Release, 2017.6.20., "Supplementary Guidance to the FSB Principles and Standards on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– Consultative Document", available at http://www.fsb.org/2017/06/supplementary-guidance-to-the-fsb-principles-and-standards-on-sound-compensation-practices/

27) See FSB Press Release, 2017.7.4., "Implementing the FSB 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and their Implementation Standards: Fifth progress report", available at http://www.fsb.org/2017/07/implementing-the-fsb-principles-for-sound-compensation-practices-and-their-implementation-standards-fifth-progress-report/